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률안 정리 (2025년 7월 발의)

2025. 07. 31.

법무법인(유한) 바른

I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 01. 목적 및 정의
- 0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
- 0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 04. 발행인의 이용자 보호의무
- 05. 감독기관 등

01 목적 및 정의

1 목적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 정의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서
 -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단일한 종류의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고
 -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
 - 다만, ①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③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④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⑤ 「상법」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⑥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0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인가요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나.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나 외국 법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과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10.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0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

신고사항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새로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백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임원 및 핵심인력 포함), ② 용도, 목적 또는 기능에 관한 정보, ③ 총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④ 기반 기술 및 보안에 관한 정보, ⑤ 이용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 ⑥ 가치안정 구조에 관한 정보, ⑦ 준비자산에 관한 정보, ⑧ 상환에 관한 정보, ⑨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	백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 발생
상품설명서 작성 및 공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발행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상품설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중요사항 거짓 기재·표시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단,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이용자가 취득하기 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면책)

0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준비자산의 구성 및 안전한 관리

준비자산의 구성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준비자산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하여야 함 ✓ ①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연동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할 것 ✓ ②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미상환잔액 이상일 것 ✓ ③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으로서 i)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과 주화, ii)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 iii) 1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v)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④ 준비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i 또는 ii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할 것
준비자산의 보관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보관
준비자산의 관리	매년 1회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의무, 매월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검토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의무, 상계·압류(가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의무 등

0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 이자 지급 금지 및 상환의무

이자 지급 금지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보유와 관련한 이자 지급 금지 ✓ 할인금, 적립금,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이든 보유자가 발행인의 계산으로 보유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이자로 봄
상환의무 및 절차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자산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인은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환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상환 정책의 공시	✓ 발행인은 ① 상환청구 절차, ② 요건, ③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상환금액이 지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예상기간, ④ 상환 청구 제한 사유, ⑤ 그 밖에 상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함

0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의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지원을 중단하여야 함

국내에서 발행된 경우	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적격 요건에 대한 사항 2. 발행인의 디지털자산 정보 공시 여부 3. 발행인 또는 디지털자산이 이 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위반하거나 이용자 이익 침해 우려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총 발행량, 가치안정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국에서 발행된 경우	1.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외국 법령에 따른 인가 등에 관한 정보 2. 발행인의 준비자산 구성 및 보유 현황 3. 발행인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방지 체계 구축 현황 4. 이용자 보호 방안 및 분쟁해결 절차 구축 여부 5. 외국 법령 위반 사실 존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04 발행인의 이용자 보호의무

▣ 내부통제기준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이해상충 관리

- 발행인과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 및 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해당 가능성을 낮춘 후 발행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됨

04 발행인의 이용자 보호의무

□ 안전성 확보

- 발행인은 이용자와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
-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장치, 소요경비 등 정보기술부문 및 발행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준수 의무 부담
- 매년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 부담

□ 거래기록 생성·보존·파기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거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오류 확인을 하기 위해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거래기록을 거래관계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의무
-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보험의 가입

- 해킹, 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

05 감독기관 등

금융위원회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
- 위반사실 발견 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권한 보유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지원 중단 명령 등 조치 권한 등 보유
- 발행인으로부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과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음
- 과징금 부과 권한
-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위탁 가능

한국은행

-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금융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 ① 자료제출 요구, ② 발행량 및 유통량 확인 협조 요청 가능
-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발행인에 대한 검사 요구 가능하며, 필요 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들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 가능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안정을 위하여 긴급 조치가 명백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발행인에 대한 조치 명령 요청 가능

05 감독기관 등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정책 수립 및 외환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 ① 자료제출 요구, ②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 거래 또는 이전에 관한 정보 확인 협조 요청 가능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발행인에 대한 조치 명령 요청 가능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

- 통화 및 외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② 한국은행 부총재, ③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함
- 위원회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총 발행량 및 유통량 관리에 관한 사항, 준비자산 구성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협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II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 01. 목적 및 정의
- 02.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제
- 03.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 04. 발행인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 05. 감독기관 등

01 목적 및 정의

1 목적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활용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 정의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 법정통화 또는 가치가 안정된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그 연동된 자산의 가치로 상환이 보장되는 디지털자산
 - ‘디지털자산’의 정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가상자산의 정의)를 따름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02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요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로서 국내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관리의 안전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보안 기준을 충족할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과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9. 그 밖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03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신고

신고사항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백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임원 및 핵심인력 포함), ② 용도, 목적 또는 기능에 관한 정보, ③ 사업계획, ④ 발행 기반 기술 및 보안에 관한 정보, ⑤ 이용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 ⑥ 발행 및 유통 구조에 관한 정보, ⑦ 준비자산에 관한 정보, ⑧ 상환에 관한 정보, ⑨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	백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되어야 발행 가능 (효력 발생 기간 명시하지 않음)
상품설명서 작성 및 공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백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함

- 백서 등 중요사항 거짓 기재·표시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i) 백서제출인과 제출 당시 발행인의 대표이사, ii)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iii) 백서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대해 평가 또는 분석의견을 기재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단,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이용자가 취득하기 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면책)

03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준비자산 구성 및 관리

준비자산의 구성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발행잔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함 1. 가치가 통화로 연동된 경우: 그 연동된 통화로 표시된 i) 현금, ii)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iii) 만기 1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국채, 외국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v)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가치가 통화 아닌 자산에 연동된 경우: 해당 자산 또는 국내 통화로 표시된 i) 현금, ii)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iii) 만기 1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국채, 외국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v)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준비자산의 보관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
준비자산의 관리	매년 1회 이상 유동성 위험 평가 실시 의무,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외감법상 감사인의 감사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의무, 상계·압류(가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의무 등

03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상환의무

상환의무 및 절차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자가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발행인은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함 ✓ 상환금액은 i)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법정통화에 연동된 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 ii) 자산에 연동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함
상환 정책의 공시	✓ 발행인은 ① 상환청구 요건 및 절차, ② 가치가 연동된 법정통화 또는 자산별 상환금액 산정 기준, ③ 상환 소요 기간, ④ 상환 제한 사유, ⑤ 상환에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 부과기준,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함

04 발행인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 재무건전성 유지

- '자본금·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단기간 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뺀 금액을
- 발행인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 (이하 "총위험액")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경영건전성 기준

- 발행인은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자기자본비율 등, ② 자산건전성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 및 시행하여야 함

▣ 안전성 확보 및 분산원장 등 취약점 분석·평가

- 발행인은 디지털자산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
-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디지털자산 거래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과 분산원장에서 중요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
- 발행인은 분산원장등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05 감독기관 등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하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 위반사실 발견 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권한 보유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 준비자산의 규모 등을 보고받음
- 과징금 부과 권한
-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위탁 가능

한국은행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해당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량, 준비자산의 규모 등을 보고받음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제출 요구 가능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대하여 발행인에 대한 검사 요구 가능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 **한서희 변호사**

suhhee.han@barunlaw.com